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전국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(법률 제17781호, 2020.12.29. 공포, 2022.1.1. 시행)에 따라 「사회보장급여법」과 동일한 내용으로 「장애인복지법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보건복지부령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1항 중 “첨부하여 관할”을 “첨부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관할이 아닌 읍·면·동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8조(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)	제38조(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)
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 및 보 호수당(이하 “장애수당등”이라 한다)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장 애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소득· 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 공 동의서를 <u>첨부하여</u> 관할 읍· 면·동장을 거쳐 시장·군수 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첨부하여</u> ----- ----- ----- <u>이 경우 관할이 아닌 읍·면·</u> <u>동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</u> <u>때에는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</u> <u>할 읍·면·동장에게 지체 없이</u> <u>이송해야 한다.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